#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 명: 이희정 소유물건(2023타경57910)

의 뢰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식

감정평가서번호: 230915-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성감정평가사사무소

## (부동산)감정평가표

Page: 1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 감 정 평 가 사 (인)

김 민 선

감정평가액	이십일억구천오백팔십구만삼천육백오십원정(₩2,195,893,650)									
의 뢰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평가 법원경매 사법보좌관 박영식 목 적									
제 출 처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희정 (2023타경57910)	감정평가 조 건	-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_	2023.09.24	2023.09.19 ~ 2023.09.24	2023.09.24						

	공투	년(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급 액	
감정	토지	99	토지	99	20,300,000	2,009,700,000	
) 평	건물	133.62	건물	133.62	1,350,000	180,387,000	
가내	<제시외물 건>	25.67	<제시외물 건>	25.67	-	5,806,650	
용							
	합 계					₩2,195,893,6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1.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서울동부지 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 (1)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2)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 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 가 하였음.

1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3년 09월 24**일로 하였음.

####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3년 09월 24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의 조건

본건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 5. 감정평가방법 및 결정

#### (1) 감정평가방법

####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

#### 다.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5조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한다.

#### 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 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수 있다.

#### (2) 감정평가방법 결정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개별평가하였음.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동법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건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바,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목측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내부상태는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지상에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와 같이 제시외물건 ⑤ⓒ이 소재하며, 면적 및 이용상황은 목측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참고바람.
- 본건 건물은 공동주택과-33852(2020.11.3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위반내용: (옥상)판넬조, 주거, 20㎡->무단증축]로 기재되었으므로 참고바람

### Ⅱ. 대상 물건의 개요 및 현황

### 1. 대상물건의 개요

### (1) 토지

구분	소재지	면적 ( m²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접면 도로	형상 지세	2023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송정동 66-26	99	대	주거용	2종일주	세각(가)	사다리 평지	4,223,000

#### (2) 건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용도	주거용
층수	지상4층
연면적( m²)	133.62
사용승인일	2018.03.13

### Ⅲ.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 (1)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 (2)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사유

(공시기준일 : 2023.01.01.)

구 분	소재지	면적 ( m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접면 도로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송정동 66-88	136	대	단독	2종 일주	세로(가)	가장형 평지	4,363,000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 (A)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23.01.01~23.09.24 ) (주거)	
2023.01.01 ~ 2023.07.31 : 0.029	
2023.07.01 ~ 2023.07.31 : 0.035	1.00091
( 1 + 0.00029 ) * ( 1 + 0.00035 * 55/31 )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 (5) 개별요인 비교

### 가. 개별요인 비교 항목

조 건		개 별 요 인 항 목		
<u> </u>	항 목	세 부 항 목		
		폭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포장		
77.エンゼ	상태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환경조건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오수처리장 유무 등,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어지 지어나니 기사 취사 드	면적, 접면너비, 깊이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부정형, 삼각지, 자루형 획지, 맹지 등		
7 122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2면 획지, 3면 획지 각지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용적제한		
007-11	규제정도	고도제한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등		
기나다긴	기나	기타		

#### 나. 개별요인 비교치

일 련 번 호	표 준 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1	A	1.00	1.00	1.00	1.05	1.00	1.00	1.050	본건은 표준지대비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우세함.

#### (6)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등을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누16300, 1998.07.10선고 98두6067,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산정방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사례단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다. 평가사례

(출처: KAPA )

기호	소재지	면적 ( m²)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평가 <del>목</del> 적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а	송정동 66-***	126	대	주거용	2종일주	가사소송	15,300,000	2023.06.12
b	송정동 66-***	130.74	대	주상용	2종일주	담보	13,900,000	2023.03.10
С	송정동 66-***	129	대	주상용	2종일주	담보	17,900,000	2023.05.19

### 라.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KAIS 등)

기 호	소재지	면적 ( m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송정동 66-*	112	대	주거용	2종일주	2,380,000,000	20,900,000	2023.03.10		
ı	건물:연와조, 연면적:147.38,사용승인일:1973.11.30.(관찰감가) 토지단가:(2,380,000,000-1,300,000*10/45*147.38)/112=20,900,000									
0	송정동 73-***	109	대	주거용	2종일주	2,000,000,000	16,900,000	2023.03.24		
2					•	2.94,사용승인일:200 *30/50*182.94)/109				

#### 마. 인근지역 지가수준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가격수준
본건 인근	2종일주	주거 및 주상용	17,000,000 원/m² ~ 22,000,000 원/m² 수준임.

#### 바. 그 밖의 요인 분석

#### (가) 비교사례 선정

상기 비교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1	A	1

#### (나) 적용사례 시점수정치

적용사례	시	정수정 기긴	ŀ	시정수정치	비고
1	2023.03.10	~	2023.09.24	1.00122	2종일주

#### (다)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라) 개별요인 비교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1	0.97	1.00	1.00	0.95	1.00	1.00	0.922	표준지는 사례대비 가로조건(도로의 폭등),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열세함.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	분	단 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가격	격 차 율
비교 사례	1	20,900,000	1.00122	1.00	0.922	19,293,309	4.418
표준지	A	4,363,000	1.00091	_	_	4,366,970	4.410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정상적인 지가수준 및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련번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	4.418	4.42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공시지가	시점	지역	개별	그 밖의	산출단가	결정단가
번호	(원/m²)	수정	요인	요인	요인	(원/㎡)	(원/㎡)
1	4,363,000	1.00091	1.00	1.050	4.420	20,267,109	20,300,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산출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 (2) 거래사례 선정

평가대상과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규모, 형상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거래사례를 선정함.

일련번호	거래사례
1	2

#### (3)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별도의 사정개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1.00)

#### (4) 시점수정

적용사례	시정	성수정 기간	<u>}</u>	시정수정치	비고
2	2023.03.24	~	2023.09.24	1.00138	2종일주

#### (5) 지역요인비교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6) 개별요인 비교

일 련 번 호	사 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1	2	1.00	1.05	1.00	1.05	1.00	1.00	1.103	본건은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우세함.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사례단가	사정	시점	지역	개별	산출단가	결정단가
번호	(원/㎡)	보정	수정	요인	요인	(원/㎡)	(원/㎡)
1	16,900,000	1.00	1.00138	1.00	1.103	18,666,424	

#### 3. 토지가액 결정

####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결정의견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원/m²)	거래사례비교법(원/㎡)	비고
1	20,300,000	18,700,000	108.5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 준, 평가사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2) 토지가액의 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20,300,000	99	2,009,700,000	-

### Ⅳ. 건물가액 산출근거

#### 1.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시설 및 관리상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음.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2. 재조달원가 산정 및 내용연수 결정

#### (1) 건물신축단가표

(출처: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년)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m²)	내용연수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2	1,741,000	50 (45~55)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530,000	50 (45~55)

#### (2)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결정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 하되,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 시공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 및 내용년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련번호	층	구조	이용상황	재조달원가(원/㎡)	내용연수
가	1~4	철근콘크리트구조	주거용	1,500,000	50

#### 3. 건물가액의 결정

층	재조달원가 (원/㎡)	내용 연수	경과 연수	잔존 연수	적용단가 (원/㎡)	면적(m²)	감정평가액(원)	비고
1~4	1,500,000	50	5	45	1,350,000	133.62	180,387,000	-
	합 계				-	133.62	180,387,000	-

### V. 감정평가액의 결정

#### 1. 토지

본건 토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인근지대상황,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태, 일반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참작 하여 산출하였음.

#### 2. 건물

본건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의 정도,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 정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 3.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2,009,700,000	
건물	180,387,000	-
합계	2,190,087,000	

###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Page: 1 지 목 용도지역 면 적 (m²) 감 정 평 가 액 일련 소재지 지번 HГ 卫 번호 공 부 단 가 액 사 정 금 구 조 용도 1 서울특별시 66-26 대 제2종 99 99 20,300,000 2,009,700,000 성동구 일반주거지역 송정동 11 가 66-26 다가구 철근콘크리트 [도로명주소] 위 지상 주택 구조 철근 서울특별시 콘크리트 성동구 지붕 송정2길4 4층 1층 10.92 133.62 1,350,000 180,387,000 1,500,000 x 45/50 40.9 2층 3층 40.9 40.9 4층 합 계 ₩2,190,087,000 <제시외물건> 66-26 주거용등 판넬조등 20 20 3,000,000 옥탑 66-26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5.67 5.67 495,000 2,806,650 옥탑 합 계 ₩2.195.893.650 계 ₩2.195,893,650.-01 하 여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Page: 1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4) 인접 도로상태(7) 공부와의 차이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다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리모델링지구(리모델링활성화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_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Page: 2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7) 공부와의 차이

\_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Page: 1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으로서,

외벽: 돌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임.

#### (2) 이용상태

본건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임.

####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 (5) 공부와의 차이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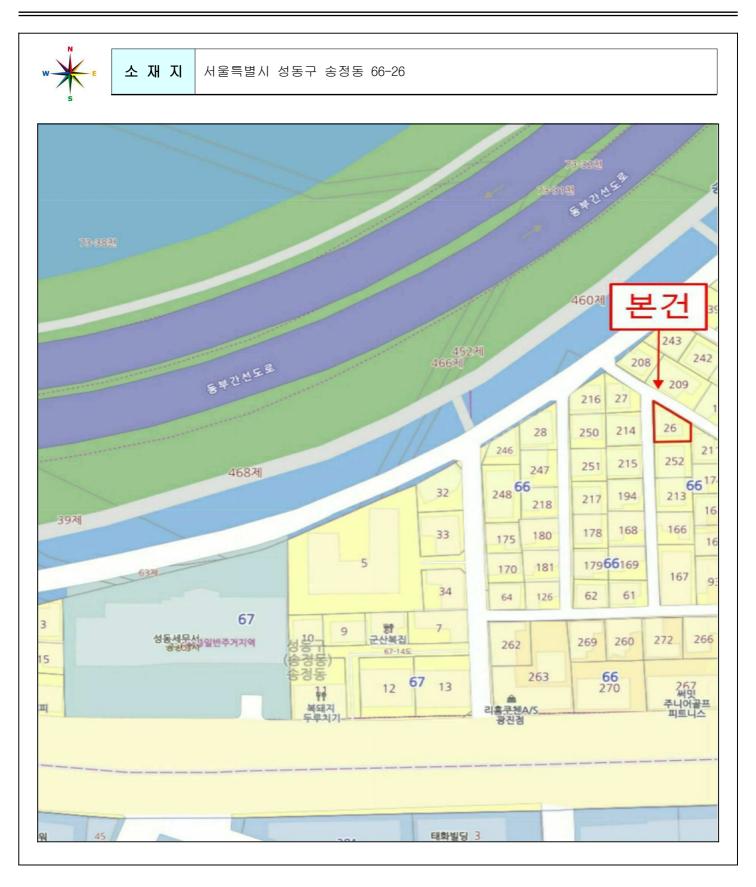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미상임.
- 본건 건물은 공동주택과-33852(2020.11.3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위반내용: (옥상)판넬조, 주거, 20㎡->무단증축]로 기재되었으므로 참고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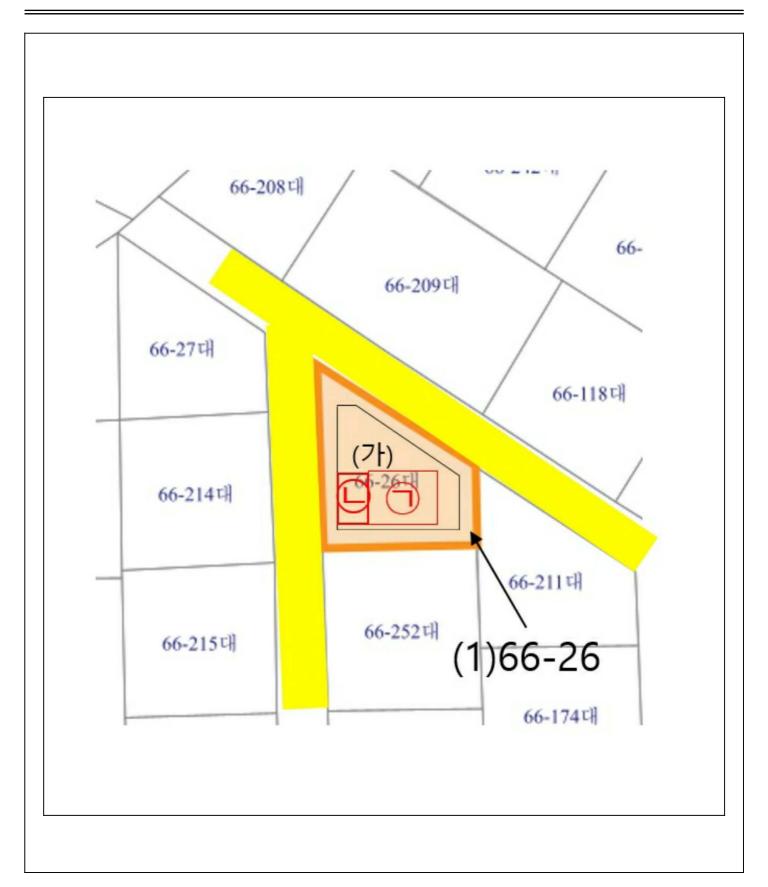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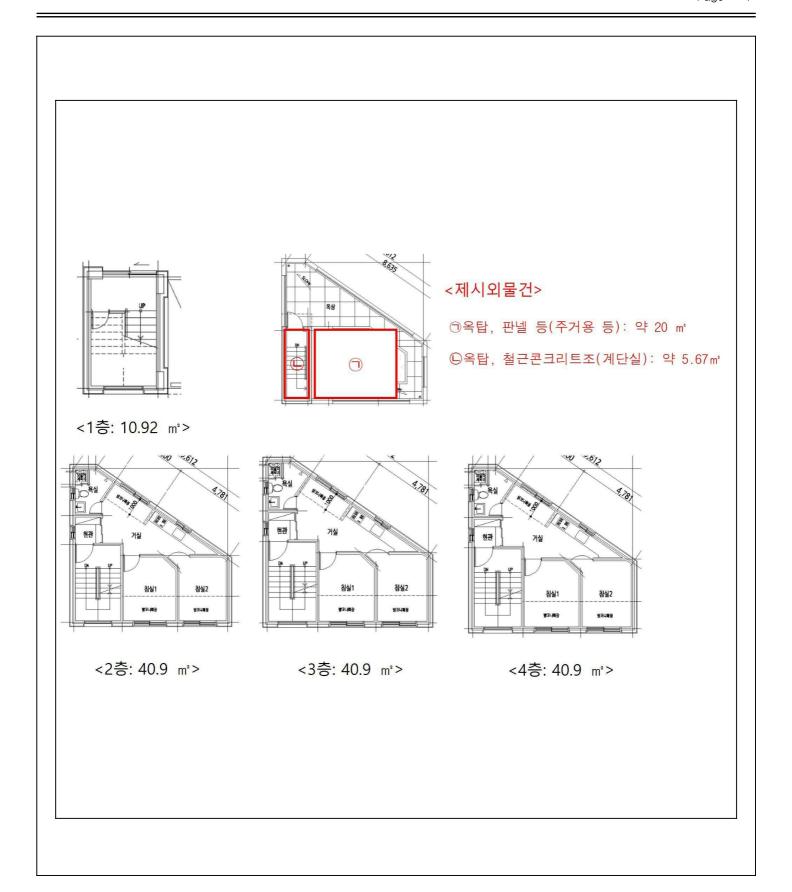
## 위 치 도



# <u>지 적 도</u>



# 건물개황도및내부구조도



Page: 1









( )



